

공고번호 제2025-74호

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강사 공개채용 공고(안)

학교법인 일송학원에서는 2018년 화성시로부터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운영하게 됨에 따라 성실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화성시민을 위한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 합니다.

2025년 6월 18일

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관장

I. 채용내용

- 근무지역 : 황계1동·황계2동 마을회관
- 모집부문 :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황계복지센터 찾아가는 단기 특강 강사

채용분야	내용	채용인원	응시자격
노래교실	1. 일시 : 2025년 7월~8월 - 월 13:30~14:30(1시간) - 목 14:00~15:00(1시간) 2. 대상 : 65세 이상 어르신	1명	-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공자 - 관련분야 경험자 우대 (경력증명서 증빙 가능)

II. 전형방법 및 일정

- 서류전형 접수기간 : 2025. 6. 18.(수) ~ 채용 시 까지
- 서류접수 방법 : 이메일(narewulpro@naver.com)접수
- 1차(서류전형) 합격자 발표 : 서류 접수 후 개별통보
- 2차(면접시험) 합격자 발표 :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
※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III. 제출 서류 (공통)

- 이력서 1부(※붙임자료 참고)
-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(※붙임자료 참고)
- 자격증 사본 각 1부(※필수제출)
- 경력증명서(※해당자에 한함)

IV. 문의

-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황계복지센터 (031-8015-7380)

V. 기타사항

1.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비밀을 보장하고,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.
2. 제출된 서류내용이 **허위**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강사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3.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.
4. 일정 등 추후변경사항은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.
5.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·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.

VI. 붙임

1.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(안) 1부.
2. 이력서 1부.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.

붙임1.

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(안)

• 공통 및 우대사항

구분	응시자격
공통사항	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①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우대사항	① 각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상위 급수자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자 우대

※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

○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(결격사유) 각호

1.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5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7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8.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,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·제40장(제360조를 제외한다)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○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(결격사유) 각호

1.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5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.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붙임2.

응 시 지 원 서

접수번호		응시분야	
성명	(한글)		
주소			
연락처		E-mail	
교육 이수	기간	전공학과/교육명	학위명
자격 면허	발급 기관	자격증 명	취득일자
주 요 경 력	근무처	근무 기간	직 위

